임실군 의회 공고 2026-10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임실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가. 관내 의용소방대가 소방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3) 전자우편:charity81@korea.kr

4. 개정안: 붙임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범위) (생 략)	제3조(지원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